

1. 개정이유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을 통하여,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에서 3번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을 총 120시간에서 총 100시간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여성정책 여성복지 · 사회복지 인권 · 여성학	5시간
전문분야 (이론)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 · 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10시간
	자활 관련 법 및 정책 · 제도에 대한 이해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5시간
전문분야 (실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 · 정서적 상황 등)	10시간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의료지원 실무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대상자별(청소년 · 장애인 등) 지원 실무	40시간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청소년 · 일반성인 · 장애인 등 대상자별 상담 기법 포함) 및 프로그램 상담사례 연구	10시간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5시간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시간
실습	상담소등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10시간
총계		100시간

부 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	여성정책, 여성복지·사회복지, 인권·여성학	9	소양	여성정책, 여성복지·사회복지, 인권·여성학	5
전문 (이론)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15	전문 (이론)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10
	자활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6		자활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5
전문 (실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정서적 상황 등)	10	전문 (실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정서적 상황 등)	10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 의료지원 실무	40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 의료지원 실무	40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대상자별(청소년·장애인 등) 지원 실무			대상자별(청소년·장애인 등) 지원 실무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청소년·일반성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상담기법 포함) 및 프로그램 상담사례 연구	10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청소년·일반성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상담기법 포함) 및 프로그램 상담사례 연구	10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5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5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
	상담소등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20		상담소등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10
총계		120	총계		100